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21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은하수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가족, 관내 개장유골 및 무연고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 자격을 세종시 연고자 등으로 제한함 (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나. 사용 신고 시 자격 확인서류 제출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2. 사용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 및 이들의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3. 사망일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체류지로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던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4. 관내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유골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5. 은하수공원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이미 안치되거나 자연장된 사람의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6.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등 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 자격) ①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서 신설>	제5조(사용 자격) ① ---------- ---------- ----------. 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신 설>	2. 사용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 및 이들의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신 설>	3. 사망일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체류지로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던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신 설>	4. 관내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유골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

	되어 있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신 설>	5. 은하수공원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이미 안치되거나 자연장된 사람의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신 설>	6.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등 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 신고 등) ①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 신고 등) ①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